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338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론 종결 2020. 10. 14.

판결 선고 2021. 1. 13.

주 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77 지분에 관하여 2016. 4.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77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6. 4. 26. 접수 제54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C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였으나 그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중소기업은행은 2008. 5. 27. 위 이용대금 원리금 채권을 주식회사 D에게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D는 2008. 6. 27. 위 이용대금 원리금 채권을 원고(변경전: 주식회사 E)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 2) 원고는 2008. 12. 30.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3168913호), 위 법원은 2009. 3. 19. 'C은 원고에게 9,028,974원과 그 중4,327,023원에 대하여 2008.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2009. 4.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공유자 지분 이전

C은 2016. 4.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77 지분에 관하여 2016. 4. 2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언니인 피고에 게 2016. 4.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의 재산 상황

C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77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이 법원의 해운대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

원고가 C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77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알지 못하여 선의였고 아버지 제사와 어머니 부양을 자신이 하기로 약정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F(C과 피고의 오빠로 추정된다), C, G(C과 피고의 어머니로 추정된다)의 각 공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증여의 경위가 피고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현

별지

부동산의 표시

경상남도 남해군

대 359.2 m²

-이상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관할 -